

저작권 제도



김 시 호 교수

E-Mail: jurist4024@gmail.com



등 동아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



Con tents

저작권 제도의 목적과 개념

2 저작권 사례 분석

3 저작권 침해



Chapter.

제도의 목적과 개념



저작물의 예시 (1)











저작물의 예시 (2)









1. 저작권의 목적·정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보호·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모·산업발전에 이바지 (저작권법 제1조).

(1) 정의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표현의 수단 또는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일체의 창작적 표현물

(2) 성립요건

- 1)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 실용성을 가져도 무방
- 2) 창작성이 있을 것 : 상대적 창작성을 의미함
- 3)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 단순한 사실, 디자인에 대한 이름 등은 보호부정
- 4) 표현물 :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함





2. 창작성

상대적 창작성(originality)	절대적 창작성(novelty)
1) 다른 저작물을 도용하지 않았을 것 2)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 3) 기존의 작품과 구별되면 족함	1) 기존의 것과 다른 전혀 새로운 것 - 특허, 디자인권
* 기존의 작품과 동일하여도 자신의 창 작하였음을 입증하면 별개의 저작물 로 성립	* 스스로 창작하였다 하여도 기존의 것과 동일하면 절대적 창작성은 부정됨





3. 표현

- (1)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나 저작물의 제명 등은 표현이 아님
- (2) 철학적이거나 숭고할 것을 요하지는 않음
- (3)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단 1개 이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창작적 표현의 경우에도 보호부정(합체의 원칙) ► 실용성을 가진 실용디자인에서 문제가 됨
- 4.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등록하는 경우 다음의 효과가 있음

등록에 따른 일정한 법적 추정력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제 3자에 대한 대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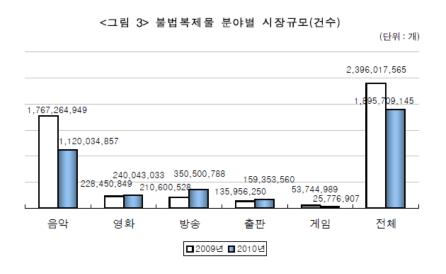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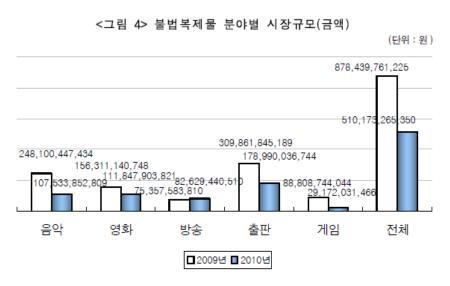
창작물을 등록해 두면 분쟁 발생시에 창작 연월일을 추정할 수 있어 누가 먼저 창작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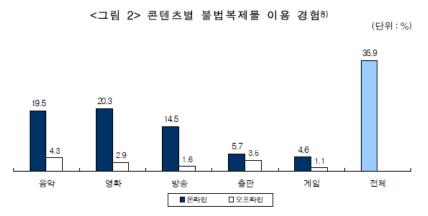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 두어야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김



6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동아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회 업무상저작물 1회

- 5. 저작물의 종류
- (1) 표현형식에 따른 분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2) 시각디자인 미술저작물 등의 일종으로서 저작물로 보는데 이견이 없음
- (3) 저작자에 따른 분류 개인저작물, 법인저작물(업무상의 저작물), 공동저작물





- 6. 저작권의 내용
 - (1) 개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별
 - (2) 저작인격권
 - 1) 공표권: 저작물의 공표여부, 시기 등을 결정할 권리
 - 2) 성명표시권: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 3) 동일성 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공중송신권 1회 2차적저작물작성권 2회

(3) 저작재산권

- 1) 복제권 :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 2) 공연권: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 3) 방송권 :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
- 4) 전송권 :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
- 5) 전시권 : 저작물을 전시할 권리
- 6) 배포권 :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
- 7) 대여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
- 8)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





저작인접권 2회 실연자의 권리 1회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보장하는 권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 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작곡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나 대본을 연기하는

배우, 음반을 만들어서 파는 음반제작자나 방송

사업자가 가지는 저작권의 일부 권리





저작인접권

7. 저작자

- (1) 저작자 일반
 - 1) 저작물을 창작한자
 - 2) 저작물의 작성에 창작적으로 기여를 하여야 하고, 아이디어 제공자나 단순보조자는 저작자가 아님
 - 3)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할수 없음
 - 4)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의저작물(업무상 저작물)에 한하여 저작자가 될 수 있음
 - 5) 계약 등에 의하여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됨





8. 저작자의 추정

- 1)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명한 이명 등이 표시된 자
- 2) 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명한 이명 등이 표시된 자
- 3) 상기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





Thank You for Listening



